

# (재)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8월 2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8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4회 부천시의회(임사회)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(2004. 9. 8) 상정
- 제114회 부천시의회(임사회)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(2003. 9. 8)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최 인 용)

가. 제안이유

- 부천문화재단의 현 상임이사의 임기만료(2001. 9. 21 ~ 2004. 9. 20)를 앞두고 2004년 제3회 재단이사회(2004. 8. 19)에서 신임 상임이사를 선출 하였기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(인적사항)

성 명 (한 자)	생 년 월 일	성 별	주 소	주요경력	최종학력
박** (朴**)	'57.4.20	여		· 경기도공예협동 조합 부이사장 · (사)짚풀문화연 구회 경기도 지회장 · 두레공방 대표	· 진주여자고등 학교 졸업 · 한성여자실업 초급대학 졸업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임명동의 대상자와 다른 인사를 고려해 본적은 없는가?	○ 재단 이사회의 의결로 추천되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논의된 적은 없음.
○ 임명동의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?	○ 현재의 조례나 정관 등에는 복수 추천 관련 내용은 없음.
○ 중요한 인사의 임명시 사전 철저한 신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?	○ 독립된 이사회의 결정으로 추천이 되었는바 이사회 자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되며, 추후 이러한 인사권 행사시 충분히 확인 검토하겠음.
○ 타 시, 군의 경우 이러한 경우의 인사권 행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?	○ 현재 우리시의 사례가 모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
○ 현재의 임명절차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후 조례 등을 개정하여 개선할 용의는? 우수한 분이 올 수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?	○ 금번 임명안 처리 이후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조례 및 정관 등을 적극적으로 개정토록 검토할 예정임.

## 4. 토론요지

### 가. 찬성토론

- 독립된 문화재단의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추천된 안건인 만큼 임명에 따른 특별한 하자가 없는바 원안동의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됨.
- 문화재단 이사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문화적인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되었고, 특히 시의회를 대표하여 두 분의 의원이 참석하여 추천 안에 동의를 하였는바 위원회 차원에서는 원안 동의를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.
- 정치적인 노선이 같고, 측근 또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 지며, 업무 추진상의 단점과 이사장 직무 수행상의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활용하여 바로잡고 개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됨.

### 나. 반대토론

- 문화재단의 업무를 보면 문화관련 업무 이외에 청소년수련관 업무와 여성회관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재단의 상임이사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라고 판단이 되는데 임명동의의 대상자의 경력을 살펴보면 적임자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됨.

## 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## 6. 소수의견

- 특정한 인사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여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향후에는 공개채용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검증되고 부천시의 문화부분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인사를 임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함.

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## (재)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

의안 번호	제282호
의결 년월일	2004. 9. 9 (제114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8. 25.

제출자 : 부천시장

### □ 제안사유

- 부천문화재단의 현 상임이사의 임기만료(2001. 9. 21 ~ 2004. 9. 20)를 앞두고 2004년 제3회 재단이사회(2004.8.19)에서 신임 상임이사를 선출하였기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자 함.

### □ 동의요구 내용

- 재단이사회에서 의결 선출된 상임이사 임명 대상자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함
- 동의 대상자

성명 (한자)	생년 월일	성 별	주 소	최종학력	주요경력
박** (朴**)	'57.4.20	여		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한성여자실업초급 대학 졸업	경기도공예협동 조합 부이사장 (사)짚풀문화연 구회 경기도지 회장 두레공방 대표

※ 주요경력 및 이력서 : 따로붙임

## □ 관련규정

-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7조(임원) 제3항
-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정관 제8조(상임이사) 제1항
-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정관 제11조(임원의 임기) 제1항

## □ 관련자료

- 2004. 제3회 재단이사회 개최 결과
- 임명동의 대상자 주요경력 및 이력서
- 관련 조례(정관) 발췌 요약문

# 관련조례(정관)발취 요약

## ○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

- 제7조(임원) 제3항
  -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
- 제9조(이사회 운영) 제3항
  -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## ○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정관

- 제8조(상임이사) 제1항
  -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
- 제11조(임원의 임기)
  -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,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- 제15조(의결 정족수 등)
  -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